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4.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0월 14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토론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의회 개최 토론회의 주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의회 토론회의 주최, 주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 진행(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의장의 승인여부 서면 통보기한,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공고 기간 등을 단축하고, 행사의 주체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3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의장의 승인여부 서면 통보기한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 규정에서 승인하였을 경우 의회 홈페이지 공고기간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에서 3일로 변경하였음.
 - 안 제6조는 토론회 등의 주관이 위원회일 경우는 위원장이, 의원일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대표가 되어 행사 주재 및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토론회 등의 신청절차를 볼 때 토론회 개최신청부터 홈페이지 공고기간까지의 절차를 수정 및 운영하여도 토론회 등의 개최 준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토론회 등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는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반면 주관은 해당 토론회 등을 실제로 진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일컬음. 따라서 위원회 주관은 위원장이 주재를, 의원 주관은 해당 의원이 주재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토론회 개최와 토론회 주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안사항 해결 등에 있어 보다 내실화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2
----------	-----

발의연월일: 2024. 10. .

발의자: 전승관, 이규선, 유승용,
차인영, 신흥식, 김지연,
이순우 의원(7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토론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의회 개최 토론회의 주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의회 토론회의 주최, 주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 나. 진행(안 제6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7일”을 각각 “3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u>30일</u>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u>7일</u>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u>7일</u>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진행) <신 설></p> <p style="margin-top: 20px;">① · ② (생략)</p>	<p>제4조(신청 및 승인) ① ----- ----- ----- ----- ----- <u>10일</u> ----- -----.</p> <p>② ----- ----- <u>3일</u> ----- ----- -----.</p> <p>③ ----- ----- ----- <u>3</u> <u>일</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진행) ① <u>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u></p> <p>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